

분 류 번 호	02	채 용 분 야	구급
시 험 절 차	필기, 체력, 서류전형, 면접	임용예정직급	소방사
필기시험과목	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응급처치학개론		

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임용예정기관	중앙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창원
자 격 증 ①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경 력 ②																			
학 위 ③																			
주 요 업 무	○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,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○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○ 항공구급대원, 안전체험관 교관, 교육대 교관,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○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(행정)처리 등에 관한 업무																		

응시자격요건

① 자격증	■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<u>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¹⁾ 또는 간호업무²⁾ 경력</u>이 있는 사람 1) “응급의료업무”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) “간호업무”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○ 자격증: (기본자격) 간호사 면허증, 응급구조사 1급, (기타자격) 의사면허증 ※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,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○ 경력요건: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¹⁾·사회복무요원²⁾으로 구급대원 보조(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)로 근무한 경력 1)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(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) 제출(소속기관의 장이 발급) 2)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→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(병·부사관·장교)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,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상 간호·응급구조·의무·보건 직책명이 기재*되어 있어야 함) * 직책명 미 기재시 “군의무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” 추가 제출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*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(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(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(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)
	② 경력 ■ 해당없음
	③ 학위 ■ 해당없음
	비고